

1. 의결주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한적십자사는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회원 모집 및 회비모금을 통해 재난이재민 구호사업, 의료사업,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로 개인의 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워짐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장애인에게도 회비모금 지로 용지가 고지되면서 국민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회적 약자를 모금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제2조 관련 요청자료의 구체적 범위에서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장애인의 성명, 주소 정보를 반영하여 회비모금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의 성명 및 주소 정보와 개인정보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 따라 이용 목적(회원 모집 및 회비모금 사무)을 신설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수급자의 성명 및 주소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장애인의 성명 및 주소

제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제1호·제2호”를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제1호·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6조 제4항에 따른 적십자 회원 모집 및 회비모금 사무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요청자료의 구체적 범위) 1·2·3·4·5 (생략) <신설> <신설>	제2조(요청자료의 구체적 범위) 1·2·3·4·5 (생략)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수급자의 성명 및 주소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장애인의 성명 및 주소
제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한적십자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u>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u> 」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제4조(<u>민감정보</u>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한적십자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u>개인정보보호법</u> 」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 <u>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u> 」 제19조제1호·제2호에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 제4항에 따른 적십자사 <u>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 사무</u>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연 락 처	(044) 202 - 2532